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역법 제20조3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,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등과 2007년부터 합의된 정부부처 협업사업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5. 17. ~ 06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(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)을 신설한다.

제29조의3 제1항에 법 제20조3의 제1항에 따라 「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에 관하여 지정기준을 별표 4-1과 같이 정한다.」를 신설한다.

제29조의3 제2항에 법 제20조3의 제3항에 따라 「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을 별표 4-2와 같이 정한다.」를 신설한다.

제29조의3 제3항에 법 제20조3의 제6항에 따라 「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, 운영성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」

1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용도의 사용한 경우

2. 기타 국방부 및 각군본부 운영지침 위반, 2년 연속으로 정원기준 미달 또는 2년 연속으로 운영성과 평가결과 80점 이하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별표 제4-1과 4-2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없 음	신 설 제29조의3((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) ① 법 제20조3의 제1항에 따라 「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에 관하여 지정기준을 별표 4-1과 같이 정한다.」 ② 법 제20조3의 제3항에 따라 「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을 별표 4-2와 같이 정한다.」 ③ 법 제20조3의 제6항에 따라 「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, 운영성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」 1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용도의 사용한 경우 2. 기타 국방부 및 각군본부 운영

	지침 위반, 2년 연속으로 정원 기준 미달 또는 2년 연속으로 운영성과 평가결과 80점 이하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-	--

[별표4-1] 전문인력 양성기관 「지정 기준」

지정 기준	세 부 내 용	배점 (점)
1. 특성화 운영계획 (25점)	1-1. 교육목표 / 중장기 발전계획 적절성	5
	1-2. 지역특성 / 관련부처 수요에 따른 특성화 교육 추진 타당성	10
	1-3. 학교장과 교원의 군특성화 보조사업에 대한 의지 (지원서 제출 시 설문결과 내용을 근거로)	10
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 (10점)	2-1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	5
	2-2. 특성화 분야 교수 학습방법과 자료개발, 활용계 획의 적절성	5
3. 교육여건 확보 및 관리 (25점)	3-1. 교직원 확보, 산학겸임교사 활용 계획 및 실적	5
	3-2.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활동 실적	5
	3-3.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및 활용 관리	10
	3-4.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 (군특성화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계획 등)	5
4. 특성화 자구 노력 (40점)	4-1. 신입생 지원여건 및 선발방법의 적절성 (홍보계획, 기숙사 및 장학금 등 여건보장 대책 등)	20
	4-2. 산학군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실적	10
	4-3. 진로지도 대책 및 실적	5
	4-4. 자체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	5

* 지정기준은 사업 시작단계('08년)에서 교육부와 협업하여 정해진 지정기준표임.

[별표4-2] 전문인력 양성기관 「운영성과 평가 기준」

평가항목	평가 지표	세부 평가내용	배점 (점)
계획수립 (5점)	국방부(각 군본부 및 해병대) 운영지침 반영 여부	운영지침 적용,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 등 사업목적 달성여부	5
학생선발 (10점)	교육청 정원 대비 학생선발 * 군부대 위탁교육 참석인원	정원대비 학생(기술인력) 선발율(%) * 국방부, 지역별 교육청 정원기준 고려 매년 운영 계획으로 학급당 최소 인원결정 시달	10
예산운영 (10점)	예산사용의 효율성 / 적절성	국방부(각군본부 및 해병대) 운영지침 반영 예산편성, 부정수급/ 과오집행 여부 등	10
졸업생 평가 (33점)	군 특성화고 졸업생 입대현황	교육청 정원 대비 군 입대율(%)	15
	군 입대자 부사관 입관현황	입대인원 대비 (임기제)부사관 임관율(%)	10
	e-MU 협약대 입학현황	당해연도 e-MU 협약대 진학률(%) * 해군의 경우, 당해연도 본 학교의 운영성과평 가 진학률과 보조사업 학교 평균 진학률 중 유 리한 성과를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	5
	군 입대자 병과학교 교육성적	병과학교 교육대상자 획득 점수	3
사업성과 (42점)	자격증 취득 실적	계획 및 실적(운영지침 준수 여부) * 군 직무향상, 장기복무 등 선발에 도움되는 자격	4
	교재/ 교보재 개발 실적	교과서 (5년 이내 개정) 및 부교재 개발 실적, 실습교보재 개발 및 확보 실적 등	6
	군 부대 위탁교육 실적	계획 및 실적 (운영지침 준수 여부)	5
	군 적응 인성교육 실적	계획 및 실적 (운영지침 준수 여부)	5
	체력단련(태권도 등) 실적	계획 및 실적 (운영지침 준수 여부), 체력 측정, 태권도 집체교육 및 단증취득 등	3
	인성검사/신체검사 결과	계획 및 실적 (운영지침 준수 여부) *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검사/ 실적 인정	3
	졸업생 추수지도 실적	계획 및 실적 (운영지침 준수 여부)	4
	대응투자 실적 (군특성화 사업)	실습기자재 구입, 양성교육비 지원, 시설 증개축 (군특전용 실습실/ 기숙사) 등	6
	국방부(각군본부 및 해병대)와 협약내용 이행여부	지침 준수 여부, 민원발생 등	6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87